

5.1.2 박물관규정

제정 2000. 04. 21.

제정 2000. 09. 10.

제1조(명칭과 위치) 본 박물관은 초당대학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초당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2조(목적) 박물관은 역사·고고·민속자료 등의 유물과 유적을 조사, 정리, 연구하고, 특히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서남해안 과 도서지방의 자료 및 국내외 안경 등 을 중점적으로 수집·정리·전시 하므로써 교육과 학술연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박물관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유적·유물의 조사·수집·연구
2. 전시 및 정리
3. 연구발표 및 연구지 발간
4. 교육과 학술연구자료 전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개인소장품) ① 교육과 학술연구자료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소장자로부터 위탁보관 관리를 요청해올 경우 전시 관리할 수 있다.

② 위탁보관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기구 및 구성원) 박물관의 기구 및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관장 1인
2. 연구조사부장 1인
3. 연구원(특별연구원 포함) 약간인
4. 학예연구원 약간인
5. 보조원 약간인
6. 행정실요원 약간인

제6조(임명) 박물관내 각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1. 관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과 참여 이상에서 총장이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조사 연구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관장이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3. 연구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원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관장이 임명 혹은 위촉할 수 있다.
4. 특별연구원은 본교 교직원이 아닌 외부인사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관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임무) 박물관의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관장은 박물관 업무를 통할하고, 박물관을 대표한다.

2. 연구조사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해당분야를 연구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관장과 연구조사부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고 관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2. 위원은 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9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기본 운영계획
2. 박물관의 예산 및 결산심의
3. 박물관의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폐
4. 수집품의 감정 및 평가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재정) 박물관의 재정은 재단보조금, 본교보조금, 용역연구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고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관람시간) 본 관의 소장품의 관람시간은 10:00시부터 16:00까지로 하되 관장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